

# 安東金氏姓譜

新羅敬順王金傳

事見叢史墓在長湍府南八里

十一代孫利請子義和

追封威尉注簿

子敏成

翰林直史官兼掌治署令追封尚書右僕射墓在安東府西一畝花林村

子孝恭

改名敏無后官至平章事性溫和无許於人臨終語其姪方慶等詳禮葬大

子方慶

子孝印

登第官至宣授學士追封中書令夫人金寧宋氏封金官國大夫人其勇即將老其女

女朴居實

女金君鼎

子七祐

子仁傑

子愼

秦朝大夫副知密直司事典法判書上將軍夫人淳昌薛氏

女羅允

子資 宰臣 无后

子承用

登第官至宣授

子厚

檢校倉議上

金方慶

推忠靖難定遠功臣三重大臣會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Special Edition 3

조선 시대 족보와

# 여성의 지위

記

글. 이남희 (원광대학교 교수)



**여자는 출가외인(出嫁外人)?**

흔히 조선 시대 여성하면 출가외인, 여필종부, 일부종사,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 같은 말들을 떠올리기 쉽다. 여성의 삶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이었을까. 실증 자료를 보면, 고려와 조선 시대는 크게 달랐다.

조선조 오백 년만 하더라도 전기와 후기가 달랐다. 불평등한 여성 이미지는 후기의 그것이다. 그것이 정형화된 이미지로 각인되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한 성씨의 혈연관계와 내력을 기록한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간행된 족보가 귀중한 자료가 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행해가는 전환기의 시대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족보는 혈통과 신분을 증빙하는 자료이기도 했다. 과거나 관리 임용 때에 4조(祖)를 확인하거나 향임(鄕任)을 임명할 때의 확인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사문서이지만 나름대로 공문서 역할도 했다.

그런 만큼 족보에서 여성은 어디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기록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변화의 일단을 읽어낼 수 있다.

**족보와 여성**

족보가 널리 간행된 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였다. 조선 중기까지 족보 간행이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1476년(성종 7) 간행된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성화보』에 앞서 1423년(세종 5)에 간행한 『문화유씨영락보(文化柳氏永樂譜)』가 있다고 하나 서문만 전하고 있다. 16세기에는 『문화유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1565년), 『강릉김씨을축보(江陵金氏乙丑譜)』(1565년), 『능성구씨을해보(綾城具氏乙亥譜)』(1575년), 『진성이씨경자보(眞城李氏庚子譜)』(1600년) 등이 있다.

이들 족보는 사회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가족 및 씨족 내에서 여성이 가졌던 지위, 당시의 문중 및 가문의식 등을 엿볼 수 있다.

**1) 기재 순서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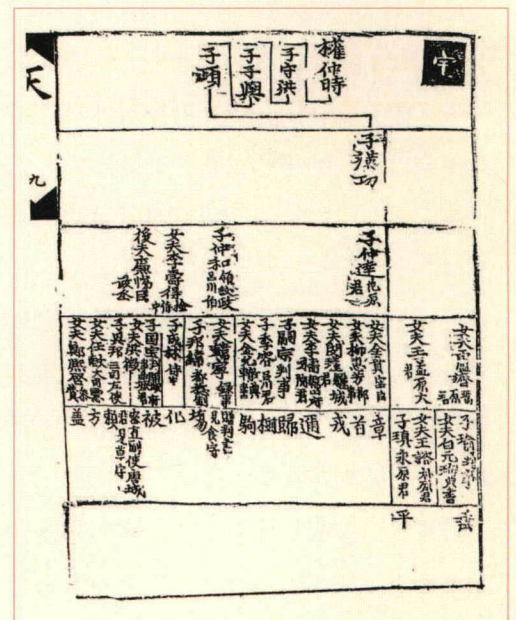
족보의 기록 방식은 선남후녀(先男後女), 아들을 먼저 적은 다음 딸을 적는 것이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예컨대 5명의 딸을 낳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는 맨 앞에 기재된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아들딸 구별 없이 출생 순으로 기록했다. 5명의 누나 다음에 아들을 적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말해준다. 뒤에서 보듯이 재산 상속과 제사에서조차 다르지 않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했을까. 아들은 이름을 적었지만, 딸은 사위 이름을 적었다. 불평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겠다. “女 아무개”라 했다. 성화보에서는 “여부(女夫)”라 적었다. 여성에게 이름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가(예컨대 허난설헌의 이름은 楚姬), 아니면 화제를 뿌린 여성들(예컨대 於乙宇同, 甘同, 鄭蘭貞) 외에는 이름을 알기 어려웠다.

**2) 재가(再嫁)와 삼가(三嫁)**

수절(守節)과 열녀(烈女) 이미지 타인지 양반 부녀자는 재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성화보』와 『가정보』에는 양반 부녀자의 재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후부(後夫)’라 적었다.



01 『안동권씨성화보』(1476년)



〈그림 1〉 3단의 “여부 이수득(女夫 李壽得)”과 “후부 염제신(後夫 廉悌臣)”은 안동 권씨 권한공의 사위들이다. 큰딸이 이수득에게 출가했으며, 그 후에 염제신에게 재가했다. 재가 사례는 『성화보』와 『가정보』에서만 보인다[『성화보』 17진, 『가정보』 18진]. 적은 숫자지만 재가 사례를 적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고려에서는 비교적 재혼이 자유로웠다. 왕비 중에도 재가녀가 있다. 성종의 문덕왕후(文德王后) 유씨, 충렬왕의 숙창원비(淑昌院妃) 김씨는 과부였지만, 나중에 왕비가 되었다. 예전 자식은 왕자와 공주의 예로 대우받았다. 재가녀에 대해 사회적인 차대나 불이익은 없었다.

그런 관습이 왕조가 바뀌었다고 하여 단숨에 변할 수는 없었다.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가문에서도 재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태종실록』은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1415년(태종 15) 정1품 영돈녕부사 이지가 죽은 중추원부사 조화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들자, 사헌부에서 그를 탄핵했다. 김씨는 문하시랑 찬성사의 딸. 시집가면서 아들 조명초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두운 저녁에 이지가 이르러서야, 조명초가 알고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김씨는 57세. 태종은 사헌부에 “아내 없는 남자와 남편 없는 여자가 서로 혼인하는 것을 어찌 반드시 나무라겠는가?” 하면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고 했다[『태종실록』 15년 11월 1일]. 재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체제가 정비되면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경국대전』(1485)에서 두 번 결혼한 재가녀 아들에 대한 차별 규정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 조목에서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재가하거나 실절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는 문과와 무과, 생원 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再嫁失行婦女之子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並武科同]) [『경국대전』 권3, 예전 제과조]

이전에는 재가녀의 아들이라는 점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종은 정승을 지낸 자들과 고위 관료들에게 부녀자의 재혼 금지를 논의하게 했다. 46명의 대신 중 42명이 삼가(三嫁)한 자만을 처벌하고 재가는 용인해주자는 의견을 내놓았다[『성종실록』 8년 7월 18일].

하지만 성종은 달랐다. “풍속의 교화는 중요한 일인데 어찌 재가를 허용하겠는가? 재가하고 싶으면 마땅히 스스로 재가할 것이다. 죄는 제 몸에도 더할 수 없는데, 어찌 자손을 돌보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열녀(烈女)는 두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결단코 재가를 허가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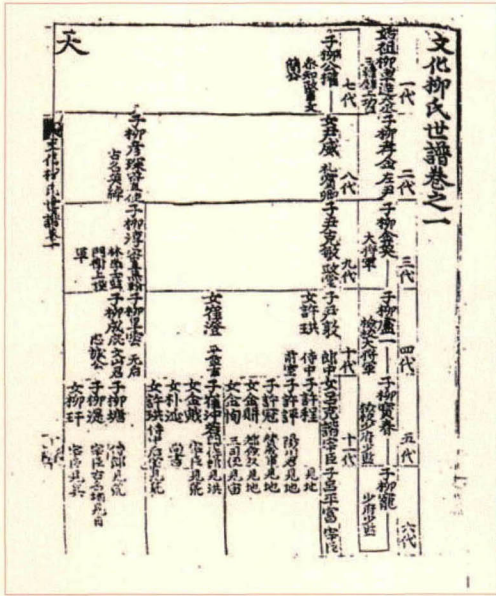
17세기 이후에는 재가 금지 윤리가 양반 사대부는 물론 평민에까지 확산되었으며, 점차 수절(守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1789년(정조 13) 절개를 세운 기생에게도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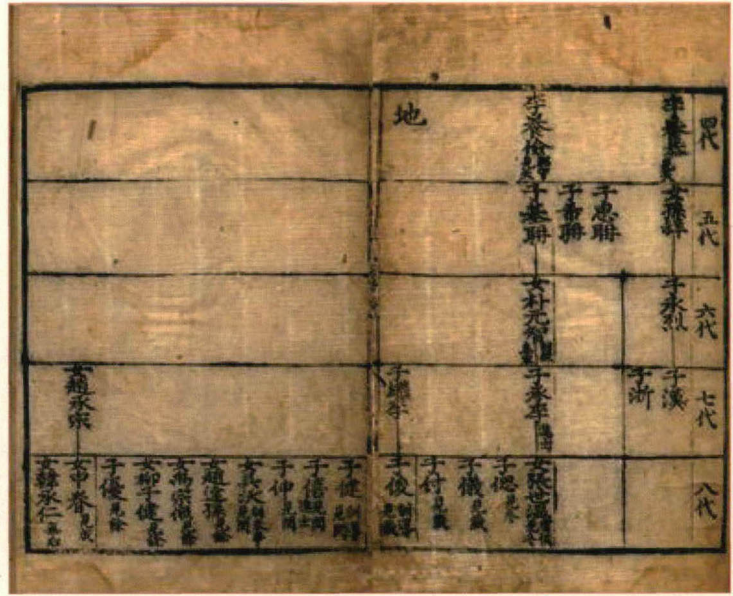
17세기 이후에는재가 금지 윤리가양반 사대부는 물론 평민에까지확산되었으며, 점차 수절(守節)이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1789년(정조 13) 절개를 세운기생에게도 정문(旌門)을세워주기도 했다.

99





02 『문화유씨가정보』(1565)



03 『진성이씨경자보』(1600)

정문(旌門)을 세워주기도 했다(『정조실록』 13년 1월 10일). 정문을 세우고, 요역을 면제해 주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절을 권장했다.

### 3) 외손과 양자(養子)

『성화보』에 수록된 사람은 모두 9,120명. 그들 중 친손, 즉 안동권씨는 867명으로 10%가 채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외손이다. 외손이란 단순히 안동권씨 또는 문화유씨 사위의 아들, 딸만이 아니라 외손의 외손까지 포함된다. 족보가 편찬될 시점의 세대까지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퇴계 이황은 문화유씨 7대손 유공권의 외손인데, 『가정보』를 통해 7대(유공권)부터 19대에 이르는 외손(이황)의 계보를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친손도 사위나 외손과 마찬가지로 성(姓)을 기재하고 있다. 독특한 형식이다. 사위나 외손을 비슷하게 대우했다는 것은 처가 및 외가에 대한 친근감이 본가(本家) 못지않았음을 말해준다. 내외손(內外孫)을 구분하지 않는 당시의 친족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경자보』 역시 외손까지 수록하고 있다(〈그림 3〉).

하지만 외손 기록에서는, 사위의 모든 자녀를 다 기재하지는 않았다. 핵심은 사위의 소생이 아니라, 그 딸의 소생이나 아니냐에 있었다. 관행으로 사위 이름을 적었으나, 자손을 적는 하단에는 집안의 여자가 낳은 자손을 수록하는 자리로 인식했던 것이다.

예컨대 『성화보』와 『가정보』에서는 사위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초실(初室), 전실(前室), 후실(後室), 삼실(三室) 등의 주기(註記)를 덧붙였다. 자신의 딸이 낳은 외손을 중심으로 기재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성화보』에는 양자(養子)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수록된 9,120명 중에는 딸만 있어도 양자

를 들이지 않았다. 소생이 없어 “무후(無後)”라 기재한 경우에도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세종실록』을 보면 “지금 세상의 풍속에는 비록 봉사(奉祀)할 아들이 없더라도, 만약 딸의 자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아들을 빌어서 후사를 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세종실록』 24년 8월 14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90년 후에 간행된 『가정보』에는 양자를 들인 사례가 보인다. 4만 2천 명 중에서 양자를 들인 경우는 126건, 문화유씨 집안에서 양자를 들인 것은 7건 정도이다. 양자제도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실시되었다. 양자제도는 가부장적인 씨족 구조의 산물이라 하겠다. 남성 중심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이어 후기로 갈수록 양자제도는 남계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행해졌다. 부계 혈연 집단으로서의 문중, 종중(宗中), 종족(宗族) 등이 형성되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4)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과 친영(親迎)

혼인한 부부는 처가에서 살았을까 본가에서 살았을까. 본가에서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조선 초에는 그렇지 않았다. 처가에서 지내는 남귀여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처가에서 식을 올린 후, 처가살이를 했다. 그러니 아들과 사위, 친손과 외손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처가에서 자라니 아내의 부모 보기를 오히려 자기 부모처럼 하고 아내의 부모 또한 그 사위 보기를 오히려 자기 아들처럼 했다(『성종실록』 18년 8월 6일).”

조정에서는 친영, 즉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혼례를 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친영제는 잘 시행되지 못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생활에서는 고려의 유풍이 남아 있었다. 후기가 되어서야 반(半)친영이 이루어졌다.

신부 집에서 혼례를 행하되 오래 머물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신랑 집에서 폐백을 행하는 삼일우귀혼(三日于歸婚)이 행해졌다. 유교적인 혼례방식이 정착되어간 것이다.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 라거나, “처가와 뒷간은 멀수록 좋다”든지, “출가외인” 등은 조선 후기에 나타나 수 있는 말이었다.

#### 5) 균분상속(均分相續)과 윤회봉사(輪回奉祀)

족보는 재산상속 등 경제적인 측면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것은 분재기(分財記) 같은 고문서, 법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경국대전』 형전을 보면, 노비와 토지를 적자녀에게 균급(均給)하도록 했다(『경국대전』 권6, 형전 사천조). 아들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상속해주었다.

딸에게도 재산 상속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속받은 몫에 대한 재산권이 보장되었다. 혼인





했다고 해서 그 재산상속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남편의 것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전해지는 재산은 아버지 쪽 재산과 어머니 쪽 재산으로 구분되었다.

균분 상속은 상속에 따르는 의무도 균등했음을 말해준다. 의무는 부모 봉양과 사후에 제사지내는 것이었다. 조선 초에는 처가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모 봉양에서도 딸의 역할이 컸다. 제사도 아들 책임만은 아니었다. 윤회(輪回) 봉사, 즉 아들과 딸이 몇 해씩 돌아가면서 부모 제사를 모셨다. 외손봉사도 가능했다.

하지만 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봉양과 제사는 장남 몫이 되었다. 상속도 균분에서 차등으로, 더욱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사는 장자의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가 되어갔다.

### 여성의 사회적 지위

조선 초의 여성의 지위는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크게 달랐다. 그것은 족보 기록에 잘 나타난다.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 기재했으며, 외손도 기록되었다. 부녀자의 재가 기록이 보이며, 양자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재산은 균분 상속되었다. 남귀여가혼, 윤회봉사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는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일반적인 여성의 '불평등'은 존재했다. 딸이 아니라 사위의 이름을 적었으니까. 자유롭고 분방했던 고려의 유품이 아직은 남아 있었으며, 유교 윤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후기로 가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화, 종법에 기초한 부계 중심의 문중, 종종 형성과정과 병행하는 것이었다. 점차 부계, 남성 중심 사회로 변해가게 되었다. 족보에도 외손을 적지 않고, 또 아들을 먼저 적는 방식으로 굳어져 갔다. 재가 금지 윤리가 평민에까지 확산되었다. 점차 수절(守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언제부터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가. 갑오경장(1894년, 고종 31)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의 재가금지는 사라지게 되었다. “부녀의 재가는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는 것. 『경국대전』 이래 부녀자들의 재혼을 구속하던 법적인 족쇄가 풀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자유’가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역시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했다. **IN**

### 필자 소개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문학박사를 받았다. 전라북도 문화재전문위원 및 도시계획위원, 서울시스템 한국학 DB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조의 科擧, 널리 인재를 구하다』(2013,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클릭 조선왕조실록』(2008, 다함미디어), 『조선 후기 집과중인 연구』(1999, 이회) 등 다수의 논저가 있다.